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보

선람	기관의장

제621호 2019. 07. 09.(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596호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597호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 7
○ 사천시 조례 제1598호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사천시 조례 제1599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600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1601호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27
○ 사천시 조례 제1602호 사천시 헌혈장려조례 ---------- 3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18호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 37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621호

사천시 조례 제159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에 있어 요구되는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
2. “시민소통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
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
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전출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두며, 분과는 다음 각 호의 5개 소관 분야별로 구성한다.

1. 행정・복지
2. 청년・학생
3. 문화・체육
4. 산업・경제
5. 환경・도시

② 분과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로 지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실비보상) 시장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시장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직무배양 등의 교육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9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행복추구권 보장, 양육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업적에 대한 존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사천시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 증진의 책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경로우대)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정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정안내와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참여 지원)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 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시니어클럽 운영 등)

2. 노인대상 각종 상담 및 서비스 연계사업

3.「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

4. 그 밖에 노인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시니어클럽 운영) ①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노인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 창출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공동작업형, 제조판매형 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3.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을 활용한 교육 훈련

4. 참여자 사후 관리

5.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시니어클럽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각 호의 시설, 기관 및 해당 노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 노인복지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그 밖의 저소득 노인

3.「노인복지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참여 노인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59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한다.”를 “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제28조제5항제1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⑨ 「초지법」제18조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의 요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경

제38조제8호 중 “사람”을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

(제28조제9항 단서 관련)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적용 대부료율
20퍼센트이상 50퍼센트미만	1.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퍼센트) × 50/10,000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	0.8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50퍼센트) × 30/10,000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미만	0.70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100퍼센트) × 15/10,000
200퍼센트이상 500퍼센트미만	0.55퍼센트 − (대부료의 예상증가율 − 200퍼센트) × 5/10,000
500퍼센트이상	0.40퍼센트

사천시 조례 제159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을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조례 제160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 모자 ·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 ·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③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10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재해보상) 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실확인을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제4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성 명	(성별 :)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기재요령]

○ 재난현장 경험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등 구체적으로 정리

○ 희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상기 본인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2-1호 서식]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제4조제4항 관련)

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남, 여) (휴대전화 ;)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여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2-2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기재요령] ○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정리, ○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상기 본 단체는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인)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제10조제1항 관련)

성 명	(인) (남, 여)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시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기재요령] ○등록번호 : 서식2의 등록번호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장 소 : ○○면(동)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확인자 직위 읍(면동)대표 성명 (인)			

※ 확인자는 읍면동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장 귀하

[개정안]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제10조제2항 관련)

등록 번호	성 명	성 별 (남, 여)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별지 제3-1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장에게 제출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제10조제7항 관련)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개정안]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제12조제2항 관련)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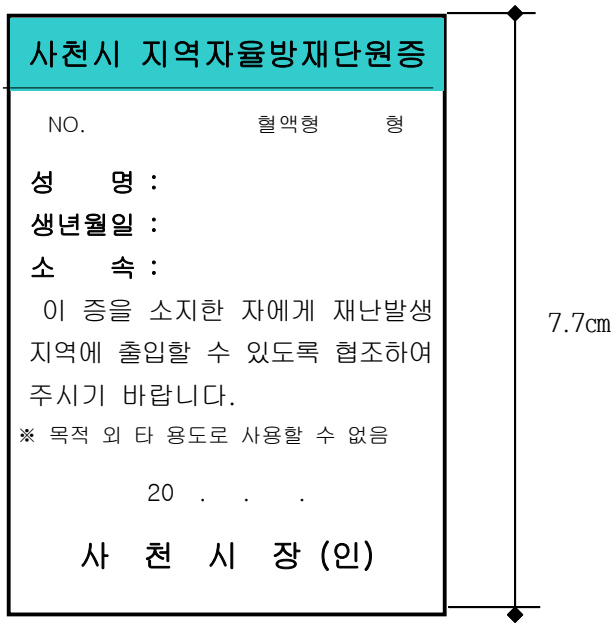

7.7㎝

[신설]

[별지 제7호 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재난안전과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사실확인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해보상(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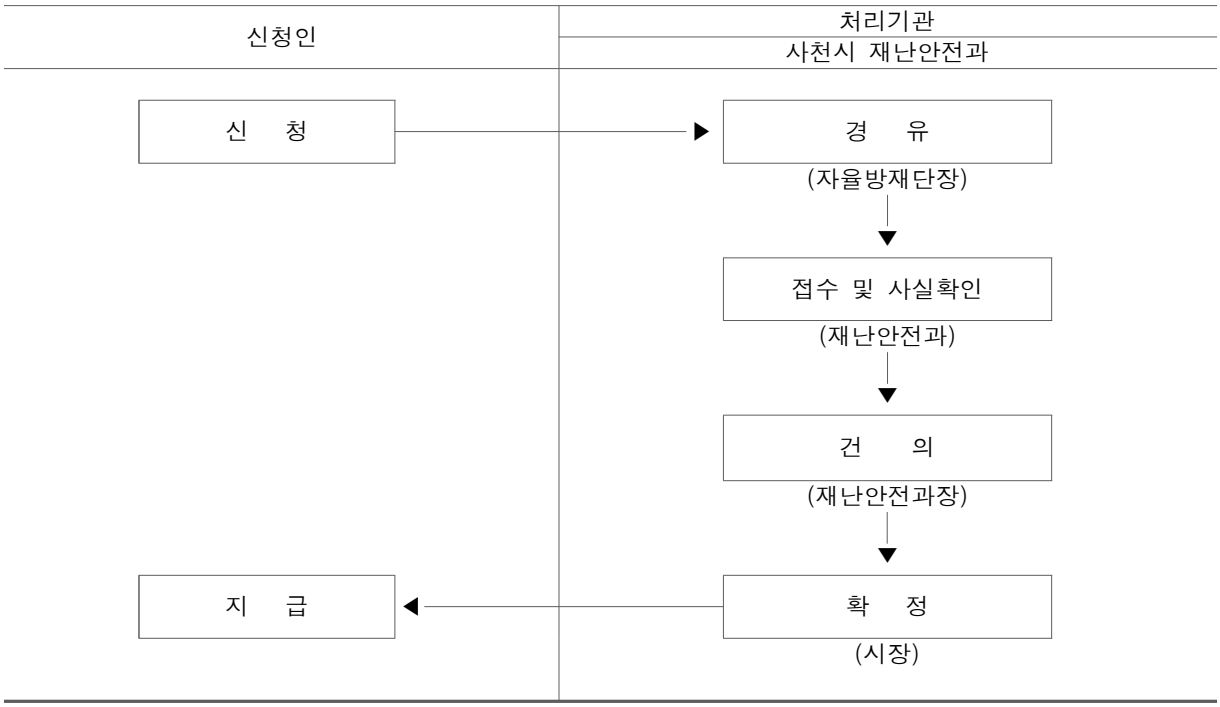

사천시 조례 160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

록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안전 통학로를 표시한 어린이 통학 안전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차량통제 등)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로의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시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규정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시장은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천시 조례 제160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헌혈장려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헌혈장려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사천시청 및 산하 보건소 등 공공장소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 · 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공고 제2019-818호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공고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제6조에 따라 202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9일

사 천 시 장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향

○ 예산편성의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방법 다양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투자사업의 주민의견 수렴·반영

○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

2. 예산편성 방향

○ 주민의견 적극 수렴으로 재정 투명성 및 효율화 달성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역점시책, 경제살리기, 서민생활보호 등 중점 편성

3. 주민참여예산 범위

○ 시 재정운용의 중점 추진사항 및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수렴(재정투자사업에 한함)

-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제외

○ 기타 예산편성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

4. 주민참여예산제 세부추진계획

1 인터넷 및 서면 설문조사 및 주민참여예산 제안 실시

○ 기　간 : 2019. 7. 9. ~ 8. 8.(30일간)

○ 대　상 : 주민, 단체

○ 방　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및 서면

- 사천시 홈페이지 '2020년도 사천시 예산편성에 바란다' 코너

○ 내　용

-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주요 현안사업 투자 방향 설문참여

- 주민참여예산 제안 신청서 제출

○ 접수(배부)처 :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055)831-2222, 예산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주민센터)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 10월 중

○ 주요내용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

3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참여대상 : 전 시민

○ 참여방법 : 사천시 홈페이지(http://www.sacheon.go.kr) 접수
(홈 → 민원/공개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내 용 :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나 예산절감, 수입증대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 접수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민의견 수렴결과 공개

○ 사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2020. 1월 중 공개

6.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5-831-2222)